[별지 제48호서식]<개정 1987.12.11>

비법정계량단위로표시된계량기의제작(수입)신고서 (제59조관련)

| 비법정계량단위로표시된계량기의제작(수입)신고서 | | | | | 처리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3일 |
| ① 성 명 | | ② 주민등록번호 | | | |
| ③ 주 소 | | | | | |
| ④ 상 호 | | | | | |
| ⑤ 사업장소재지 | | | | | |
| ⑥ 계 량 기 명 | ⑦규 격 | ⑧수입또는제작구분 | ⑨수 량 | ⑩제작연월일 | ⑪용 도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
계량법시행령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제작(수입)하고자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인)

시·도 지 사 귀하

| 구 비 서 류 | 수 수 료 |
|---|---|
| 없 음 | 없 음 |

4203-14B 190㎜×268㎜

1981.3.30. 승인 (신문용지 54g/㎡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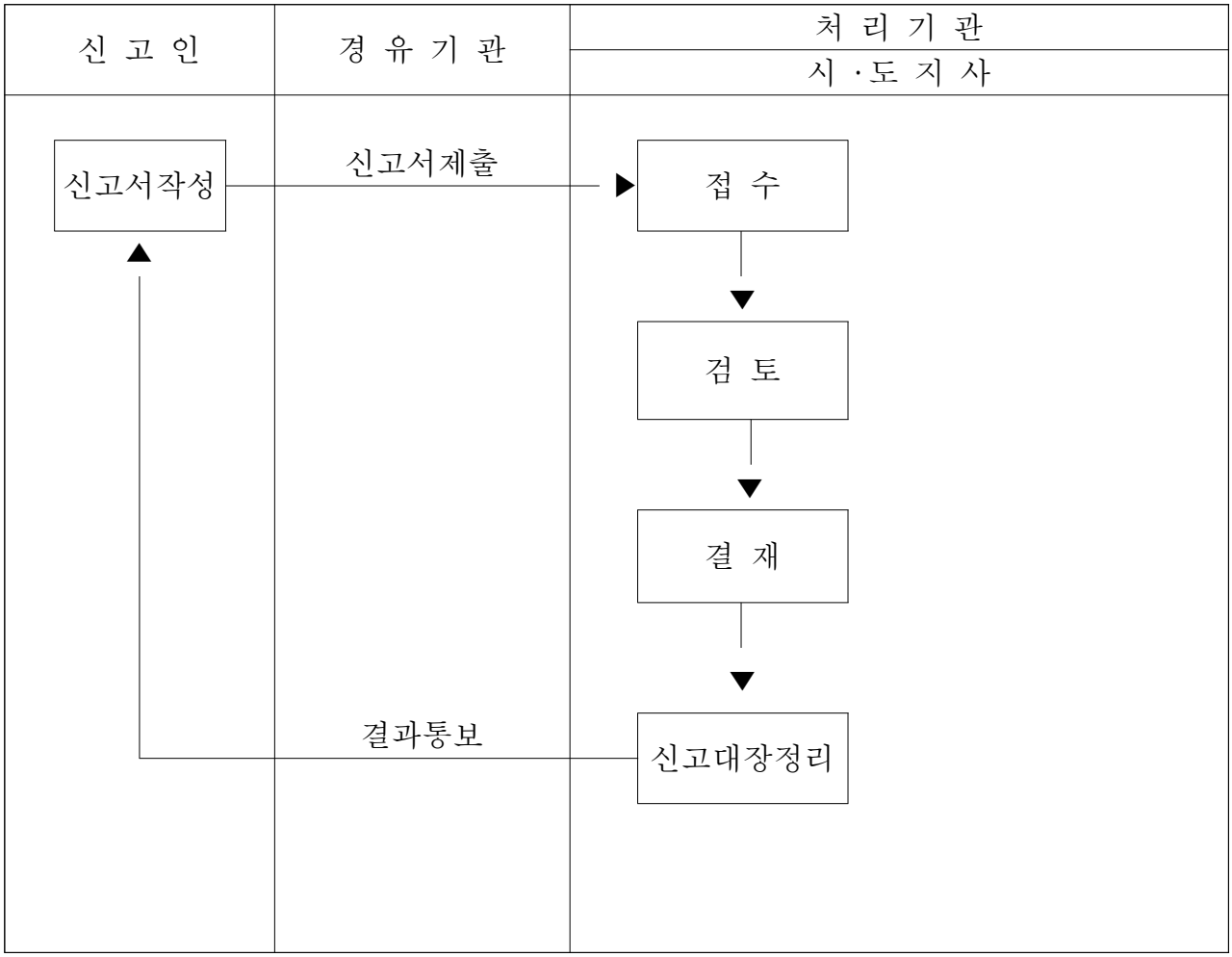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